성주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7. 11. .
제 출 자 : 성주군수

1. 제정이유

○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군수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식재하거나 이식·제거·가지치기 등을 하고자 할 때 군수의 승인절차, 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군수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식재하거나 이식·제거 또는 가치치기 등을 하고자 할 때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함(안 제3조)

나. 군수 외의 자가 필요에 의해 가로수의 식재·이식·제거·가치치기 등을 하고자 할 때 부담금 산정기준을 정함(안 제4조)

다. 가로수와 관리시설물 등이 훼손 및 피해를 입었을 경우 부담금 징수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(안 제6조)

라. 부담금의 관리, 징수 및 훼손자 부담금 강제징수 방법 등을 정함(안 제7조 내지 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1)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1조

2) 도 표준조례안 : 도 산림과- 4322(2006. 12. 20)호
가로수 조성·관리 조례 표준 작성, 배포 알림

나. 예산관련사항 : 해당없음

다. 기 타

1) 제정조례안 : 붙임

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3)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성주군 조례 제　　호

성주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성주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 외의자(이하 “원인자”라 한다)가 가로수를 식재하거나 이식,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하고자 할 때 군수의 승인절차, 기간,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관리대상)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도로, 「농어촌도로정비법」제2조에 의한 도로, 마을안길 등에 가로수를 식재하거나 이식, 제거 또는 가지치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

제3조 (승인) ① 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원인자가 가로수를 식재하거나 이식,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원인자가 제1항에 의한 승인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. 승인신청 내용이 관련 법령, 조례, 계획 등에 부적합하여 반려된 경우 원인자는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,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.

제4조 (원인자 부담금) ① 원인자가 필요에 의하여 가로수를 식재하거나 이식,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

② 제3조 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은 군수가 한다.

③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제5조 (사업의 시행) ①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예치받은 후 시행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준공 14일 전에 군수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.

제6조 (훼손자부담금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에게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 할 수 있다.

1.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
2.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
3.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
4. 그 밖의 가로수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군수와 협의하여 직접 원상 복구한 경우에는 군수는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다만,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에 상당하는 금액을 2년간 예치토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.

③ 그 밖에 훼손자 부담금으로 사업을 시행한 후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
제7조 (부담금 관리 등) ① 군수는 제4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해 원인자 및 훼손자로부터 받은 부담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계좌에 보관·관리한다.

② 군수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사업을 시행한 후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
제8조 (원인자 부담금의 징수)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원인자가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원인자가 부담금을 독촉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조 규정에 의한 승인을 취소한다.

제9조 (훼손자 부담금의 강제징수) ①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훼손자가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세법」 제27조의 가산금 산정 규정을 준용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할 자가 독촉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제10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［별지 제 1호 서식］

가로수사업(식재·이식·제거·가지치기 등)승인 신고서

<table>
<tr><td colspan="8">가로수사업(식재·이식·제거·가지치기 등)승인 신청서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신청인</td><td>성 명(명칭)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주민등록번호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주 소</td><td colspan="3"></td><td>연락처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사업대상</td><td>가로수 위치</td><td colspan="6"></td></tr>
<tr><td>수 종</td><td></td><td>규격</td><td colspan="2">수 고 :
흉고직경 : ,근원직경 :</td><td>수량</td><td>본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이 식 사 유</td><td colspan="6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작 업 방 법</td><td colspan="6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작 업 기 간</td><td colspan="6">년 월 일부터
년 월 일까지 (일간)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부담금</td><td>금액</td><td colspan="6">금 원정()</td></tr>
<tr><td>납부기간</td><td colspan="6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8">「 성주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」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신청인 (인)

성 주 군 수 귀하</td></tr>
<tr><td colspan="8">구비서류 1. 사업계획서, 2. 위치도, 3. 설계도면(평면도, 단면도)
4.. 도로의 점용허가 서류 사본 1부</td></tr>
</table>

※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

[별표 1]

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(제4조 관련)

1. 식재나 이식을 원하는 경우

가.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 :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

※ 원인자가 이식할 경우는 하자담보금 예치

나.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: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

다. 원인자가 설계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사전 승인

2. 가지치기・제거하는 경우

가. 원인자가 가지치기・제거하는 경우 : 관리청의 사전 승인 후 시행

나. 관리청이 가지치기・제거하는 경우 :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

3. 제거를 원하는 경우

가.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+ 폐기물처리비 + 폐기물상차비

나. 제거의 경우는 현장여건 상 또는 시기적으로 이식이 불가능할 때에만 적용

4. 산출기준

가.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: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원가계산 산정 기준 적용

나. 수목비 등 자재비 : 가격정보지(조달청) 가격적용,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물가정보 및 물가자료 등 시중 가격정보지를 적용

다. 인건비 : 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하여 발표하는 공사부문 노임단가

라. 인건비 요율 적용기준 : 건설연구원에서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품셈(조경공사) 적용

마.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산정기준 : 조달청에서 정하여 발표하는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적용기준에 의함.

바. 예치금 납부방법 : 현금으로 예치. 다만, 하자보증금은 인허가보증보험증원으로 예치가능

사. 담보예치금의 환불 등 : 하자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

아. 원인자가 원상복구 경우는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10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업체가 대행

※ 원상복구는 법 시행규칙 별표10의 가로수 조성·관리 기준(14. 식재와 관리의 시행)에서 규정한 자가 시행하고, 이에 대한 복구확인서 및 하자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서류(보증보험증권)를 제출하였을 경우 부담금 납입을 생략할 수 있음.

[별표 2]

훼손자 부담금의 산정기준(제6조 관련)

1. 수목피해의 경우

가. 벌목, 수간절단 등으로 조경수 가치가 없는 경우

: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+ 폐기물처리비 + 폐기물 상차비

나. 과도한 가지훼손 또는 상당한 보호시설을 요하는 경우의 부담금

= 수목비의 50% 이내+보호시설재료비 및 작업비

※ 강도의 가지치기 : 수관의 1/3 이상

다. 경미한 가지훼손 또는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 부담금

= 수목비의 10%이내＋ 작업비

라. 훼손자가 원상 복구하는 경우 : 군수의 사전 승인 후 시행

※ 훼손자가 원상 복구할 경우는 하자담보금 예치.

마. 관리청에서 원상복구 할 경우 :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

2. 산출기준 : [별표 1] 의 산출기준과 같음